

통합물관리 시대의 기본 원칙과 방향



김다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
한강유역지원팀 전문위원
daeunkim@skku.edu

최근 물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물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는 물 분야의 위기감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수자원량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과거 정부 부처 별로 관리하던 수량, 수질, 수재해 등은 현재 환경부의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림 1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물환경, 물이용, 기타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던 기존 법령들이며, 국가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써 이러한 계획들을 모두 담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 기본계획은 통합물관리에 대한 기존 정책의 부

재 및 효율성의 측면 등을 고려한 최신의 물 관련 정책이며, OECD가 한국에 권고한 수량과 수질의 통합에 대한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유역 별 통합물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며, 유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물관리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통합물관리는 2017년 물관리일원화가 확정된 후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 2019년 물관리기본법 제정 및 시행과 물관리위원회의 출범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를 거쳤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의 기존 물관리체계를 통합하는 10년 단위의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수·치수·수생태 등을 모두 고려한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유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를 거쳐 수립된 국가·유역의 물관리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표 1).

국제사회에서는 과거부터 “통합”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물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다. 서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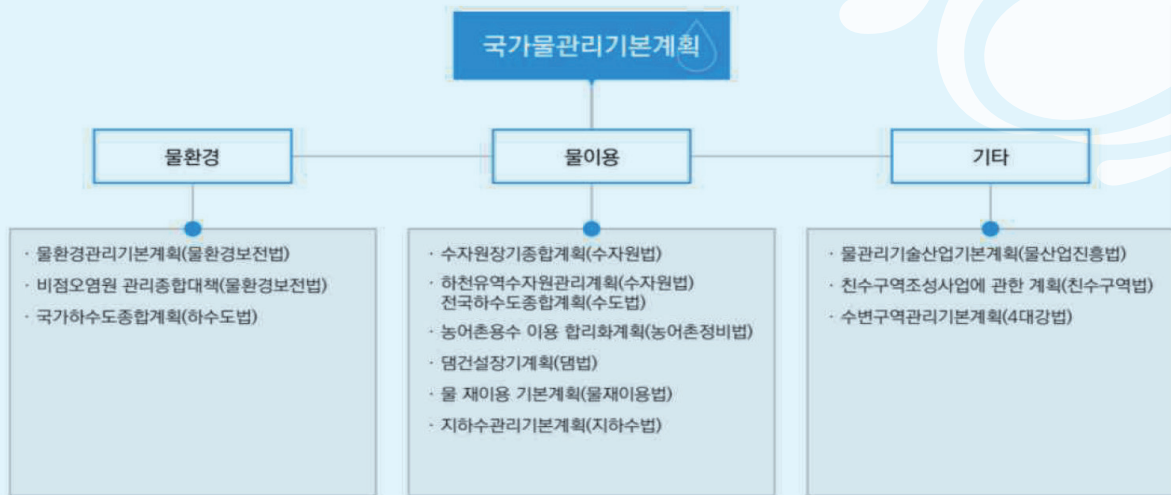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해야 하는 물관리관련 기존 국가계획(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정보포털)

표 1. 물관리기본법 상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련된 사항 중 일부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일부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일부
<p>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 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이 공급·이용·배분 3.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고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에서는 국내 중앙부처 중 국토부의 수량 및 환경부의 수질을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수재해 및 타 수자원 기능을 부처 별로 조정하여 유역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IWRA)는 물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단일 부처에서 수량 및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동향에 따라 국내에서도 1997년 물관리기본법이 발의되었으며, 2016년의 물관리 기본법안에서는 유역별, 통합관리, 균형배분, 물수요관리 우선, 비용부담 등의 원칙 하에 현재의 물관리기본법 최종안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물관리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그림 2)이며, 12대 기본원칙은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물관리, 협력과 연계 관리, 물의 배분, 물수요관리 등, 물 사용의 허가 등, 비용부담,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 참여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전 및 기본 원칙 하 부문별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그림 2).

2021년 5월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1차 공청회를 수행하여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국가계획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계획에서 위에 언급한 12대 기본원칙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적인 시선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다. 물관리 중 최상위 계획인만큼 원칙에 대한 충실한 반영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에서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정합성 및 하위 추진과제들에 대한 연계성에 대하여 정확히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4대 유역 별로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은 물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계획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하는 만큼 국가기본계획을 이수·치수와 수생태, 거버넌스 분야 모두 균형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의 비전 및 전략(출처 : 통합물관리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터저널)

이를 위해서는 통합 물관리의 미래를 위한 최종성과물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며, 국가 기본계획 하위의 세분화된 계획 및 각 분야 별 연계 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해야한다. 또한, 명확한 전략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이를 지원하는 관련 계획의 효과적인 실행 계획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및 유역 거버넌스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물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의 수립은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최초의 통합적 시도인 만큼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통합물관리 시대의 도래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계획의 도입으로 안정적인 물관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정보포털(www.nwbp.re.kr/sub1/1_1.php)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

통합물관리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05)